

지정번호 제 호

수렵강습기관 지정서

기관명

성명(대표자)

생년월일

소재지

(전화번호:)

수렵강습과목

- 수렵의 역사·문화
- 수렵에 관한 법령 및 수렵의 절차
- 야생동물의 보호·관리에 관한 사항
- 수렵도구의 사용법, 안전수칙 및 사고발생 시 조치방법

유효기간

지정조건

「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4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제3항에 따라 수렵강습기관으로 지정합니다.

년 월 일

환경부장관

직인